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 나 75982
판결을
중심으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허 범 행 |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행정법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행정법전공)
환경보전협회 자문변호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경기특장개발 주식회사, KNJ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환경기업 고문변호사
tel. 02-594-9600 | h9332@hanmail.net

이 건의 소송 진행경과

원고들은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북구 검단동, 동변동, 복현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대구비행장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의 주거지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호 판결 참조).

따라서 대구비행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대구비행장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1)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호 판결 참조).

2)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 전투기의 경우에는 민항기와 달리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비행이 이루어지므로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되어 느끼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점, 전투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은 최고 소음도가 민항기의 경우보다 높고 금속성 고주파음이라는 특성이 있어 동일한 소음도라고 하더라도 민항기 비행으로 인한 소음보다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1) 피고는,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 이후에 위 지역으로 전입한 원고 등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

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으로 전입하였으므로, 위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 경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매항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 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 경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 중 1989. 1. 1 이후에 대구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원고 등은 대구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 중 30%를 감액하기로 한다.

- 2) 피고는 다시, 대구비행장 소음소송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 2010. 11. 25 선고됨으로써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소음피해지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널리 알려진 2011. 1 경 이후에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전입한 자들은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전면 적용하여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자들보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많이 감경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 경 피고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된 사실,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7다7456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원인

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막연히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거주자들이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등 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9. 1 이후 전입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 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기로 하여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1. 1. 1 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 중 50%를 감액하기로 한다.

평가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 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고,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7다7456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원인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등 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입자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 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2011. 1. 1 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의 50%를 감액하여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확대하여 적용한 사안이다.